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II. 미시적인 분석 : 수정담론의 비판 |
| II. 거시적인 접근 :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 1.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론 |
| 1. 빅데이터 환경의 개관 | 2. 정보주체의 동의권 변경론 |
| 2.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 IV. 나오며 |

I. 들어가며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은, 긴 시간 동안 비판 받아온 바 있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담론을 담아내고 있는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머물러 있던 종래의 시각을 벗어던지고 민간부문에 대하여도 본격적인 규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 현행의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해 내기 위해 다면적·다층적 고려가 있었음은 물론 많은 이해당사자의 담론들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조율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오랜 진통을 견디어 탄생한 법률인 만큼 그 역할과 효과가 크리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예측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이전부터 이미 비판이 시작된 바 있으며, 동법률의 시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는 이미 동법의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보고서들

*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등장하고 있다.¹⁾ 그 결정적인 동인은 바로 ‘ICT 토대의 전환’ 덕분이다. 이는 곧 또 다른 ICT 환경의 도래와 이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예를 들어 보자면, 소위 ‘빅데이터(Big Data)’ 열풍이 가장 대표적이다. 인류의 수많은 디지털 활동이 양산해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새로이 가공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새로운 ICT 환경, 지금 전 세계 인터넷산업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렇듯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흥분의 시선²⁾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개인정보의 사회적 해킹’ 등으로 표현되는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시선으로 이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다.³⁾ 이렇듯 빅데이터로 통칭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아직 제대로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신생 법률을 완전히 ‘올드패션’으로 취급하게끔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하 수정담론)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오류와 미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 대답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독특한 법적 지형을 고려해야 하기

1) 최경진/황창근/신영수/이철남,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ICT 법정책 연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2); 문재완/황성기/고학수/구태연/이인호/김기창/박광배/박경신/박상철/최경진/구본권/권영준/전응준/박병주,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참조.

2) “‘빅데이터’는 당신의 미래를 내다본다”, 아시아경제, 2013.5.25자;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디지털타임스, 2013.5.24자; “‘통찰&수익’ 빅데이터를 적극 검토해야 할 5가지 이유”, CIO뉴스, 2013.5.23자; “대한민국 빅데이터, 어디로 가야할까”, 디지털데일리, 2013.5.22자.

3)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논의 시작할 때”, ETNEWS, 2013.5.24자; “속도 붙은 빅데이터 부작용 최소화할”, 디지털타임스, 2013.4.4자;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KSIDI 보고서-기업 빅데이터 분석과정 개인정보 무분별 활용-정부 규제 필요”, 디지털타임스, 2013.2.12자; “‘빅데이터’ 시대의 역기능을 막으려면?”, 부산일보, 2012.11.21자.

때문이다. 즉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비단 디지털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이 뿌리내리고 있는 바탕이 오직 기술적인 기반만도 아니며, 나아가 동법이 구하고자 하는 법익이 비단 경제적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고려가 선순환적 예측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법학자는 필히 ‘검증과 형량’을 해보아야 한다. 먼저 기술의 보급과 그 완숙의 정도, 이를 통한 사회적 환경변화의 실재와 그 영향력, 법제도적 변화의 필요성과 그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변화의 범위와 내용을 충돌하는 가치관들을 비교형량하면서 검토해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대한 수정담론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새로운 법적 이슈들을 요약해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총체적인 수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신생 담론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빅데이터 환경하의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개념 재설정’과 ‘동의권의 재구성’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Ⅱ. 거시적인 접근 :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1. 빅데이터 환경의 개관

1.1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 환경에 대한 각종의 자료들을 종합해보아도,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Big) 자료(Data)’를 의미한다는 것 이상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정의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합의된 바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에 대한 주목은 아마도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와 IDC⁴⁾가 빅데이터를 2012년 주목해야 할 세계적인 이슈로 꼽으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⁵⁾ 대체적으로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방식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셋”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 맥킨지(McKinsey)의 개념설정⁶⁾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⁷⁾ 또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⁸⁾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 데이터의 집합 자체를 넘어 플랫폼이나 분석기법 등 기술적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⁹⁾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모두들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의미하

4) Richard L. Villars/Carl W. Olofson/Matthew Eastwood, “Big Data: What It Is and Why You Should Care”(IDC, 2011), <http://sites.amd.com/us/Documents/IDC_AMD_Big_Data_Whitepaper.pdf>, 검색일 : 2013.10.5.

5) 이강용/남궁현/심재철/조기성/류 원, “공공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산(Knowledge Base) 구축”, 정보과학회지 제30권 제6호(한국정보과학회, 2012), 41쪽.

6)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McKinsey & Company, 2011), <http://www.mckinsey.com/~media/McKinsey/dotcom/Insights%20and%20pubs/MGI/Research/Technology%20and%20Innovation/Big%20Data/MGI_big_data_full_report.ashx>, 검색일 : 2013.10.5.

7) 빅데이터의 정의에 관한 상서는 이강용/남궁현/심재철/조기성/류 원, 앞의 글, 41-42쪽; 최경진/황창근/신영수/이철남, 앞의 보고서, 117쪽; 최경진/정준현/구태연/지성우/김도승/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2), 5-8쪽 등.

8) Richard L. Villars/Carl W. Olofson/Matthew Eastwood, 앞의 글, 2-3쪽.

9) 최경진/황창근/신영수/이철남, 앞의 보고서, 117쪽.

는 ‘3V’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여기서의 ‘크기’는 데이터 규모의 방대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조직에서 그 수집·저장하여 관리·분석을 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Terra-byte, TB)¹¹⁾를 넘어 수 페타바이트(Peta-byte, PB)¹²⁾에 이를 만큼 그 양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말한다. 다음으로 ‘속도’는 이렇듯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분석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데이터의 입·출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빠른 처리와 분석의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다양성’은, 분석해야 될 데이터의 형태가 종래의 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¹³⁾뿐만이 아니라 반정형(Semi-structured Data)¹⁴⁾·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¹⁵⁾까지 모두 포함하여 처리해야 됨을 의미한다.

이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결국 빅데이터는 단순히 크기가 방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생성과 소비가 매우 빨라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웠던 매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종합해 볼 수 있다.

10) 이강용/남궁현/심재철/조기성/류원, 앞의 글, 41-42쪽; 최경진/황창근/신영수/이철남, 앞의 보고서, 117-119쪽; 최경진/정준현/구태연/지성우/김도승/성준호, 앞의 보고서, 9-12쪽 등.

11) 테라바이트는 1,000기가바이트(Giga-byte, GB), 즉 1조 바이트를 의미한다.

12) 페타바이트는 1,000,000기가바이트(GB)를 의미하며, 이는 대략 17만 4천 편의 DVD영화(약 6GB)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13) 정해진 구조로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로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가 그 예가 될 수 있다(이강용/남궁현/심재철/조기성/류원, 앞의 논문, 43쪽).

14)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XML 또는 HTML 문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이강용/남궁현/심재철/조기성/류원, 위의 논문, 43쪽).

15) 미리 정해진 구조가 없고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로 일반 텍스트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XML 또는 HTML 문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위의 각주와 동일 쪽).

1.2 빅데이터 환경의 의미

빅데이터 환경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현해 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자’라는 정보주체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그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활용·소비하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 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모바일 기술이 이미 종래의 인터넷 환경과 융합된다는 것은 이미 ‘올드 뉴스’이고, 이제는 SNS 등의 모바일 서비스와 넘쳐나는 스마트 기기들 덕분에 그야말로 개인데이터의 범람¹⁶⁾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각종의 비정형 데이터를 생산하게 되는 개인적 소통을 위한 서비스(예를 들어 SNS, 블로그, 유튜브 등)들은 가히 개인데이터의 폭증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들은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원천이 되고, 따라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보주체는 ‘데이터의 생산자’의 지위인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단순히 사용만 하게 되는 ‘데이터의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즉 오늘날 정보주체의 모습은 소위 ‘PC 시대’의 컴퓨터 사용자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ICT 기술의 발전을 통해 빚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한편 빅데이터의 가치는 이러한 현상적 의미를 넘어서는 때 비로소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 즉 1차로 생산된 개인데이터가 그 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재가공되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빅데이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ICT 기술은

16) 이윤택,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IT & Future Strategy 제8호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연구부, 2013), 1쪽.

정보주체 개인의 취향이나 사고, 행태는 물론 감정과 분위기, 습관이나 버릇에 관한 데이터까지 집적하고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면 GPS나 디지털 카메라 등의 센서들이 ‘개인이 어디를 방문하고 무엇을 쇼핑하는 것인지’를 구별해 내는 소위 ‘라이프 로그(Life Log)’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있으며, SNS상의 메시지나 접속기록, 검색패턴은 물론 데이터 속성이 기록된 ‘그림자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기도 하다.¹⁷⁾ 또한 인터넷 플랫폼(인터넷 서비스 기업 또는 포털 등)은 위치정보, 검색정보, 개인 기호 등 다양한 문맥정보를 생성·관리하고 있으며, 이동통신회사나 디지털 기기의 제조회사들조차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기반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들은 집적·분석되어 가치창출을 위해 재가공된다. 즉 ① 국가의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국가방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적인 가치’, ② 소비행태, 소득수준, 생활양식이나 병력 등의 정보를 기업의 이윤창출에 활용하게 되는 ‘경제적·상업적 가치’, ③ 취미나 특기, 성격이나 가치관, 경험 등이 공유를 위해 활용하게 되는 ‘사적인 가치’ 등의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사슬이 형성됨은 물론 그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¹⁹⁾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 환경의 면모이자, 빅데이터의 가치인 것이다.

17) 이유택, 위의 논문, 1쪽.

18) 최경진/황창근/신영수/이철남, 앞의 보고서, 117-118쪽.

19) 이에 관한 상세는 이강용/남궁현/심재철/조기성/류원, 앞의 논문, 42-45쪽; 최경진/황창근/신영수/이철남, 앞의 보고서, 117-118쪽; 이유택, 앞의 논문, 3쪽 등.

2.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2.1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빅데이터 환경 이전에도 개인정보는 이미 상품화되어 거래의 대상이 된 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의 성격이 ‘본격적’인 상품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를 보호의 대상이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던 우리 법제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법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활용²⁰⁾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크게 3가지의 관점을 양산한 바 있다. ① 개인데이터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열린 디지털 세계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유토피아적 관점’, ② 정부와 기업이 디지털 프로파일 구축을 통해 개인을 통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보호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체주의적 관점’, ③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규제와 사업모델을 통해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동시에 그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는 ‘절충적 관점’ 등²¹⁾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체제 전반에 걸친 대혼란의 시기인 것이다.

한편 빅데이터 환경은 기존의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상정하고 있는 데이터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빅데이터 환경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축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가공의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분석을 통해 상품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 수집의 경로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그

20)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상세는 최경진/정준현/구태인/지성우/김도승/성준호, 앞의 보고서, 14-23쪽.

21) 이유택, 앞의 논문, 4쪽.

형태는 정형·반정형·비정형을 구분치 않고 조합하게 되며 심지어 형태분석이나 패턴의 추출까지 진행하게 된다. 즉 다면적·다층적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 침해의 정도는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심대한 침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특정인의 생활과 가치관 그리고 그의 기억과 미래의 꿈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히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다.

2.2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수정담론

빅데이터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체제 전반의 모순에 관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의 논의는 주로 ‘유토피아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목소리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① 개인정보의 정의나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대의 태동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²²⁾ 그리고 ② 규제일변도로 치우쳐있던 과거 개인정보

22) 구태언,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이인호,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의 법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김기창,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동의의 허구성과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권영준, “개인정보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전웅준,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박병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의학 및 보건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참조.

보호정책이나 프라이버시 가치관이 현재 개방형 네트워크 문화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²³⁾ 나아가 ③ SNS, 클라우드 서비스나 행태기반 서비스 등 무서운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ICT 신기술의 새로운 국면에 무력하다는 점²⁴⁾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물론 이를 두고 ‘유토피아적 관점’이 아니라 ‘절충적 관점’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고민은, 점차 다수의 글들을 접하게 되면서 양자의 차이를 알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보호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집필된 글²⁵⁾을 쉬이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미국학계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빅데이터가 야기하는 심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새로운 규제의 시작점과 구체적인 쟁점의 제시, 심지어 규제와 정책의 관점에서 빅데이터 자체의 모순도 지적하고 있다.²⁶⁾ 유럽의 움직임 또한 마찬가지로

23)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 신화에서 규범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최경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구분권,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참조.

24) 김기창,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박광배,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박상철, “행태기반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포함) 관련 법령 정비 방안”,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참조.

25) 이에 해당하는 글로 필자가 찾아낸 국내논문으로는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단국법학 제37권 제1호(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가 유일하다.

지이다. EU는 지난 2012년 1월에 즈음하여, 종래의 ‘유럽위원회 데이터 보호지침(1995)’²⁷⁾을 계승·강화한 ‘EU 데이터 보호규정안(2012)’²⁸⁾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규정안은 기존의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되어 EU 전역에서 통일된 법령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①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데이터의 처리를 동의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회수하여 다른 서비스로 이동시킬 수 있는 등 데이터의 이동성(Data Portability)을 보장하며, ③ 사망 후 자신에게 불리한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는 물론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규정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체제의 대대적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⁹⁾

26) Neil M. Richard/Jonathan H. King, “Three Paradoxes of Big Data”, Stanford Law Review Online(2013), <http://www.stanfordlawreview.org/sites/default/files/online/topics/66_StanLRevOnline_41_RichardsKing.pdf>, 검색일 : 2013.10.5.; Omer Tene/Jules Polonetsky, “Privacy in the Age of Big Data: A Time for Big Decisions”, Stanford Law Review Online(2012), <http://www.stanfordlawreview.org/sites/default/files/online/topics/64-SLRO-63_1.pdf>, 검색일 : 2013.10.5.; Cynthia Dwork/Deirdre K. Mulligan, “It’s not Privacy, and It’s not Fair”, Stanford Law Review Online(2013), <<http://www.stanfordlawreview.org/sites/default/files/online/topics/DworkMulliganSLR.pdf>>, 검색일 : 2013.10.5.; Joseph W. Jerome, “Buying and Selling Privacy: Big Data’s Different Burdens and Benefits”, Stanford Law Review Online(2013), <http://www.stanfordlawreview.org/sites/default/files/online/topics/66_StanLRevOnline_47_Jerome.pdf>, 검색일 : 2013.10.5.

27)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95/46/EC.

2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2.1.25,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검색일 : 2013.10.5.; 동 규정안은 유럽의회를 통과할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Ⅲ. 미시적인 분석 : 수정담론의 비판

1. 개인정보의 개념 수정론

수정담론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쟁점은 현행법 체제의 개인정보 개념을 수정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생존성)’이라는 요소와 ‘정보로부터 해당 개인을 알 수 있거나(식별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 수 있을 것(결합성)’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정의방식은 기타 관련법제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제2조, 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동법 제2조, 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동법 제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동규칙 제4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시행령 제6조)’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³⁰⁾

29) 지면관계상 상술할 여력이 없으나, 미국 오바마 정부도 지난 2012년 2월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을 통해 개인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2012),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privacy-final.pdf>>, 검색일 : 2013.10.5).

30)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식별요소를 도입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와는 상이하다(동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1 수정담론의 검토

수정담론은 ‘개인정보’를 곧바로 ‘프라이버시’로 취급하는 논리가 오류라는 바탕 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개인정보의 보호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개인정보의 사회적 활용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정보주체의 보호만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현행 입법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적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이용’에 관한 새로운 조항까지도 마련해야한 다고 주장한다.³¹⁾ 이러한 논리전개의 기저에는 우리입법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과거 권 위주의 정부시절에 자행되었던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험하고 얻은 일종의 ‘트라우마’의 산물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³²⁾ 그렇다. 처참하기 그지없었던 우리네 프라이버시 관련사를 곰곰이 떠올려보면, 어쩌면 이러한 시각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행 입법태도를 구성해낸 종래의 경험과 담론들에 대해 면밀하고도 비판적인 검증을 시행해 보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침해의 현상을 수집하고 분석한 많은 자료³³⁾들이 진정 트라우마로 인한 것들인지 말이다.

한편 이러한 수정담론의 입장은 현행의 개인정보 개념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즉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31) 구태언,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안뉴스 기고문(2013), 1-2쪽.

32) 구태언, 위의 기고문, 2쪽.

33) 대표적인 자료로는 국회의원 진선미(민주통합당),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012);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2009) 등 참조.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설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즉 괄호 앞쪽의 정보(이하 전자)는 몰라도 괄호 속의 정보(이하 후자)까지 동시에 규정하게 되면서 그 범주가 대단히 넓다는 것인데, 이 덕분에 기업의 영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형벌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³⁴⁾ 이러한 논지는 결국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필자에 따라서 ‘개인식별정보와 사람관련정보’³⁵⁾로 설정하기도 하고 ‘개인정보와 개인에 관한 정보’³⁶⁾로 표현하기도 하나, 어찌되었건 양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하자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논지는 대단히 실용적인 취지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즉 전자가 제거된 후자만을 취급할 경우 사실상 익명화되어 개인정보성이 상실되므로,³⁷⁾ 현재의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프라이버시 보호의 차원에 바라보면, 본격적인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대한 우려가 발생함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개인정보의 개념의 재설정은 단순히 그 분류나 범위를 재확정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개인정보의 상품화’ 또는 ‘프라이버시의 상업화’를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도 민감한 법적·정책적 논제인 것이다.

34) 구태언, 앞의 논문(각주 22), 38-39쪽.

35) 구태언, 위의 논문(각주 22), 43-44쪽.

36) 황성기, 앞의 논문, 19쪽.

37) 구태언, 앞의 논문(각주 22), 43-44쪽.

1.2 구체적인 분석

1.2.1 식별성의 문제

개인정보의 개념설정이 광범위하다는 논지는 결국 ‘식별의 가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우리 개인정보법제가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① 원칙적으로는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를 상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비식별정보(Non-PII)’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의 핵심은 비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이다. 빅데이터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주로 비식별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이 괄호안의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하고 있는 한 빅데이터 환경에서 수집 및 재가공되는 모든 정보도 동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곧 빅데이터 환경의 콘셉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런 이유로 수정담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개념을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즉 비식별정보를 개인식별정보와는 차별적으로 취급을 하여, 그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거나 아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특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라는 법문의 해석이 쟁점이다. 비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이 부분의 해석을 넓게 해석한다면 빅데이터 환경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정보의 대부분이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다.³⁸⁾ 실제 사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의 내용³⁹⁾과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38) 박광배,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Ⅱ: 개인정보보호 그 현실속으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23쪽.

39) “개인인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들은 대부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식별이 가능

판결)의 판시내용⁴⁰⁾을 들고 있다.

한편 빅데이터의 특유한 속성인 다면성(변화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재가공 이전에는 개인식별성을 갖추지 아니하던 것이 재가공 이후에 식별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⁴¹⁾ 즉 수집의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용 또는 제공 등의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현행 법제에서는 이를 해결해낼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1.2.2 비판적 검토

먼저 개인정보의 범위축소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빅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은 거의 공인된 바와 다름없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종래의 보호 장치를 허물어 내기 위한 입론을 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발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왜냐하면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발상은 아마도 유일무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핀바 있는 ‘EU 데이터 보호규정안(2012)’의 경우에는 종래의 지침에 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한 바 있다.⁴²⁾ 또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해지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이하 중략)”; 박광배, 위의 논문(각주 38), 23쪽.

40) “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일인에게 보유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 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IMEI(국제 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나 USIM 일련번호는 통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는 이유로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박광배, 위의 논문(각주 38), 23쪽).

41) 최경진/정준현/구태언/지성우/김도승/성준호, 앞의 보고서, 78-80쪽.

즉 개인적 특성의 평가, 개인에 관한 분석 또는 예측을 위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⁴³⁾ 나아가 지난해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에서는 일종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대권’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하기도 하였다.⁴⁴⁾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에 즈음하여 개인식별정보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자거나 비식별 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을 축소하자는 것은, 참으로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대다수의 법률에 등장하는 정의규정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개인정보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의 표현 또한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회현상을 추상적인 언어적 표현 안으로 담아낼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동법상의 정의규정 또한 ‘불명확개념으로서의 오류’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42) Article 4, (2):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 그렇다고 말 그대로의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Article 4, (1)의 ‘data subject’의 정의에서 정보주체의 개념을 한정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data subject’ means an identified natural person or a natural person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by means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online identifi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of that person).

43) Article 4, 1: Every natural person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measure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this natural person or significantly affects this natural person, and which is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tended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this natural person or to analyse or predict in particular the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loc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reliability or behaviour.

44) 3. RESPECT FOR CONTEXT: Consumers have a right to expect that companies will collect, use, and disclose personal data in way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context in which consumers provide the data.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해석 상 모호한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개인정보 정의조항 관련 입법례

국 가	내 용
OECD 가이드라인	-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⁴⁵⁾
EU지침	-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 식별될 수 있는 자란 신원확인 번호나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질 중 하나 이상의 요소 등을 참고(reference)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⁴⁶⁾
EU규정(안)	- ‘정보주체’란 식별된 자연인 또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다른 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특히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또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하나 또는 복수의 요소에 관한 정보들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된 자연인을 말한다. ⁴⁷⁾ - ‘개인정보’란 정보주체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말한다.
영국	- 다음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 당해 정보; 또는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likely)이 있는 기타 데이터나 정보(information), 그리고 해당 개인에 대한 견해의 표시나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관리자 또는 기타 사람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표시를 포함하는 데이터나 정보 ⁴⁸⁾
독일	-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의 인적,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⁴⁹⁾
일본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서술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한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되어, 그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⁵⁰⁾
미국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개개 항목 또는 그 집합을 말한다. 그 기록(record)에는 당해 개인의 교육, 금전적 거래, 병력, 전과, 취업경력에 관한 정보가 담기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당해 개인의 이름 또는 식별번호나 식별부호 혹은 지문, 성문, 사진과 같은 당해 개인에게 고유한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⁵¹⁾

45)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구태언,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Ⅱ: 개인정보보호 그 현실 속으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각주 20 재인용.

46)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cation number or to one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를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축소하거나 그 보호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담론을 우리나라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종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개념설정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해 턱없이 이상한 바도 없다. 결국 수정담론의 발상은 그리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한정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당해 규정의 해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빅데이터의 다면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 이는 개념규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동 규정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제 하에서는 사법부의 융통성 있는 해석을 통해 얻어내어야

or more factors specific to his physical, physiological,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구태언, 위의 논문(각주 45), 각주 21 재인용.

47) 각주 42 참조.

48) data which relates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from that data, or from that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구태언, 앞의 글(각주 45), 각주 23 재인용.

49) Personenbezogene Daten sind Einzelangaben über persönliche oder sachliche Verhältnisse einer bestimmten oder bestimmaren natürlichen Person (Betroffener): 구태언, 앞의 글(각주 45), 각주 24 재인용.

50)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とは、生存する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つて、当該情報に含まれる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記述等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他の情報と容易に照合することができ、それ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ものを含む)をいう(구태언, 앞의 논문(각주 45), 각주 25 재인용).

51) 5 U.S.C. §552a (a) (4) the term “record” means any item, collection, or grouping of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that is maintained by an agenc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his education, financial transactions, medical history, and criminal or employment history and that contains his name, or the identifying number, symbol, or other identifying particular assigned to the individual, such as a finger or voice print or a photograph(구태언, 앞의 논문(각주 45), 각주 26 재인용).

할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앞서 언급한 하급심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빅데이터 환경 아래에서 매우 탄력적인 형태로 변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반정형·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해석을 지향한다든지, 지금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쿠키(Cookie)’ 정보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입법⁵²⁾의 흠결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요컨대 수정담론이 제시하는 개념규정과 관련한 제문제들은 빅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정합성을 가진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것이지, 개념규정의 손질을 통해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병충해가 예상된다고 하여, 애써 심었던 사과나무를 몽땅 뽑아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2. 정보주체의 동의권 변경론

2.1 정보주체의 동의권

세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식의 ‘옵트인(Opt-in)’ 제도와 미국식의 ‘옵트아웃(Opt-out)’ 제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옵트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기 이전에 미리 정보주체에게 수집과 처리의 목적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Affirmative authorization; explicit consent)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옵트아웃은 우편, 전자우편, 브로슈어, 팝업, 인터넷 알람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알리고 이에 대해 정보

52) 2009년 개정된 ePrivacy Directive, 즉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에서는 쿠키정보의 수집을 제한한 바 있다.

주체가 정식(formally)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⁵³⁾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원칙적으로 옵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아주 예외적으로 옵트아웃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시(동법 제15조 제1항)·제3자 제공시(동법 제17조 제1항)·국외 제3자 제공시(동법 제17조 제3항)·목적 외의 이용시(동법 제18조 제2항)·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의 이용시(동법 제19조) 등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즉 옵트인)를 얻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동의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를 통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러한 동의절차는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대원칙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관련법규에서도 그 내용은 동일한 상황이다. 다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동법 제23조 및 제24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구분동의’(동법 제24조의2 제3항)와 일맥상통한 취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등장하는 ‘서면주의의 원칙’(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독특하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미리 약관상에 명시한 이후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동법 제18조 제1항)이 특이하다.

한편 옵트아웃을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들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의 경우와 위치정보보호법 제22조의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의 경우가 있다. 나아가 아예 동의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53) 이창범, 앞의 논문, 519-520쪽.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그것이다.

2.2 수정담론의 논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정담론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으로 본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은 개인정보의 ‘공개’에 있는 것이지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⁵⁴⁾ 나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그 판단기준이 달라져야 함을 주장⁵⁵⁾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가지는 포괄성 때문에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는 무력한 것⁵⁶⁾이며,

54) 문재완, 앞의 논문, 9쪽.

55) 구태언, 앞의 기고문, 2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별화⁵⁷⁾는 물론 사생활영역과 공개영역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⁵⁸⁾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설정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개념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수정담론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과도하게 엄격함’을 주장한다. ① 정보의 국외 이전 등의 경우에, 수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② 실제 개인정보 이전 등의 경우에 정보주체가 관심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무감각한 동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③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사업자 면책규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논하고 있다.⁵⁹⁾

한편 빅데이터의 속성상, 이러한 동의제도가 매우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① 빅데이터는 수집된 데이터의 자유로운 조합과 연결을 전제로 있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데이터들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므로, 데이터의 결합과정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고 자유로운 결합이 인정되어야만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한 논지이다. 또한 ② 정보주체가 그 자체로서는 식별성이 없는 정보에 대하여 추후의 결합 여부나 결합범위를 미리 결정·선택하게 한다면 이는 결국 각 정보주체마다 그 결합의 정도를 따로따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증가하게 되는 결합·유지비용 때문에 빅데이터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유력한 근거로 들고 있다. 나아가 ③ 빅데이

56) 문재완, 앞의 논문, 9-10쪽.

57) 구태언, 앞의 기고문, 2쪽; 문재완, 위의 논문, 10쪽.

58) 문재완, 위의 논문, 10쪽.

59) 박광배, 앞의 논문(각주 38), 29-30쪽.

터의 속성상 새로운 정보의 생성시점이나 그 내용상의 범위를 특정한다는 것이 곤란하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동의’는 몰라도(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처리에 관한 동의’를 선택·결정할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는 실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부적합의 좋은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⁶⁰⁾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하여 수정답론은, ① 기존의 고지와 동의 일변도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정보주체에게 요구되는 고지와 동의사항을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로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⁶¹⁾해야 한다거나 ② 빅데이터와 관련한 동의의 방식을 옵트아웃으로 전환하자는 주장⁶²⁾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2.3 비판적 검토

먼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해석상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논지에 대해 살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이 개인정보의 ‘공개’에 있는 것이지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로 무한정 수집만 된다고 가정한다면, 자기결정권과는 전혀 무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인가?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한 개인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는 기본권에 대하여 어떻게 이러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신체의 자유권이라는 기본권

60) 최경진/정준현/구태언/지성우/김도승/성준호, 앞의 보고서, 81-82쪽.

61) 박광배, 앞의 논문(각주 38), 30-32쪽.

62) 박광배, 위의 논문, 32쪽; 최경진/정준현/구태언/지성우/김도승/성준호, 앞의 보고서, 82쪽.

은 국가가 특정인을 체포할 때에만 적용되고 사인이 타인을 감금하거나 체포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당해 논지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판단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면의 관계상 이를 상술할 수는 없겠으나, 어찌되었건 우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러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그리 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게 해두고 싶다.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별화는 물론 사생활영역과 공개영역의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지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에 관한 보호법제만이 존재하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긴 시간 동안 입법공백의 상태였던 것을 해결해낸 장본인이다. 즉 그 부문에 있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한 모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동법의 입법취지이다. 이러한 연혁을 거슬러, 다시금 그 부문을 나누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대체 얼마나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핀다. 옵트인 제도 자체를 엄격하다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그러한 취지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엄격한 국가는 유럽에 너무나 많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규제의 강도나 규정내용의 섬세함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우리의 법제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어김없이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럽은 기존의 규정에다 한층 더 강화된 입법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일일이 동의를 받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실제 정보주체가 이에 무관심하다는 점, 동의제도가 사업자 면책규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는 점 등의 문제들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유럽은 좀 더 세밀하고 한층 강화된 입법을 선택한 것뿐이다. 즉 ‘과도하게 엄격’하여 발생한다는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정합성을 가진 입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지 기존의 입법내용마저 허물어낸다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속성상 현행의 동의제도가 부적합하다는 논지에 대하여 살핀다. 예시한 세가지의 논거를 살피는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빅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논지는 상당부분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옵트인 체제를 허물어내고 옵트아웃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동의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특성이 빚어낸 입법부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부조화는 정보통신 관련법규에는 빈번히 출현하는 문제이다. 기술의 발전속도를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통상 이러한 난관의 해결은 기술발전의 추이를 신중하게 짚어보고 이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입법자의 면밀한 판단 이후에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도래가 임박한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고 난 이후에나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한편 필자는 이 논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적시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만약 이러한 부조화를 이유로 진정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데이터의 ‘수집’을 통제하는 것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체제가 데이터의 ‘생산’이나 ‘사용’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도록 조율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보주체와 이를 수집하는 기업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1차원적 접근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수집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새로이 가공되는 등의 다차원적인 시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려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빅데이터 환경의 속성상 수집된 정보의 이동과 변모는 가히 극한에 달할 것이 자명하게 예상되는 바이므로, 데이터의 흐름을 다면적·다층적 견지에서 바라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수정작업이 현행의 동의 제도나 수집단계에 대한 원칙들을 부정하면서 진행되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급속한 기술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정보주체와 그의 데이터를 최초로 수집하는 주체는 항상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규정 내용은 말 그대로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부정이 있을 수 없다. 요컨대 개인정보 자체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현재의 초점에 더하여,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가공과 활용에도 더 많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빅데이터 환경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변화들과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적 이슈들을 검토해 보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ICT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개막을 전인해내는 저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또한 이러한 변화 덕분에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에 대한 수정담론의 여러 논지들 가운데, 특히 개인정보 개념의 수정론과 정보주체의 동의권 변경론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이를 분석해 보았다. 굳이 지면을 또다시 빌려 그 검토의 결과를 나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쟁점의 해당부분에서 적지 않은 분량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도 했거니와, 수정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의 대안이나 해결책들이 그다지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유감스러운

검토의 결과를 다시금 언급하기가 난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대신하여 짧은 연구소감을 밝히자면, 너무나 성급하거나 매우 위험한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직은 추상적인 상황에 불과한 빅데이터 환경을 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꾸어온 우리의 입법과 원칙들을 한 순간에 허물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마치 탐을 쌓아올리듯 진행되어 왔다.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얻어낸 기존의 진리를 토대로 삼아, 다시금 새로운 도전과 반성을 담은 또 다른 한 층을 올리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는 경험에 대한 반성이며, 창조는 지식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입하자면, 지금의 시점은 새로운 한 층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시기일 뿐 개인정보 보호체제의 패러다임적 전환 시기로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아직은 반성과 보완의 시점인 것이다.

(투고일 2013년 12월 9일, 심사(의뢰)일 2014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1일)

주제어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빅데이터, 옵트인, 옵트아웃

참고문헌

1. 논문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개인정보보호법 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25-33쪽.
- 구본권,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139-146쪽.
- 구태언,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 II: 개인정보보호 그 현실속으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33-57쪽.
- _____,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34-45쪽.
- 권영준, “개인정보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147-160쪽.
- 김기창,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동의의 허구성과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61-71쪽.
- _____,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72-83쪽.
-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 신화에서 규범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1-10쪽.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96-116쪽.

박광배,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84-95쪽.

_____,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토론회Ⅱ: 개인정보보호 그 현실속으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14-32쪽.

박병주, “개인정보보호법이 의학 및 보건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172-182쪽.

박상철, “행태기반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 포함) 관련 법령 정비 방안”,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117-129쪽.

이강용/남궁현/심재철/조기성/류원, “공공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Knowledge Base) 구축”, 정보과학회지 제 30권 제6호, 한국정보과학회, 2012, 40-46쪽.

이유탉,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활용”, IT & Future Strategy 제8호,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 전략연구부, 2013, 1-24쪽.

이인호,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의 법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46-60쪽.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단국법학 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09-559쪽.

전응준,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포럼, 2013, 161-171쪽.

최경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포럼, 2013, 130-138쪽.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포럼, 2013, 11-25쪽.

Cynthia Dwork/Deirdre K.Mulligan, “It’s not Privacy, and It’s not Fair”, *Stanford Law Review Online*, 2013, 35-40쪽.

Joseph W. Jerome, “Buying and Selling Privacy: Big Data’s Different Burdens and Benefits”, *Stanford Law Review Online*, 2013, 47-53쪽.

Neil M. Richard/Jonathan H. King, “Three Paradoxes of Big Data”, *Stanford Law Review Online*, 2013, 41-46쪽.

Omer Tene/Jules Polonetsky, “Privacy in the Age of Big Data: A Time for Big Decisions”, *Stanford Law Review Online*, 2012, 63-69쪽.

2. 기타

구태언,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안뉴스 기고문, 2013.
국회의원 진선미(민주통합당),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2.

진보네트워크센터,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9.

최경진/황창근/신영수/이철남,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ICT 법
정책 연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정
보화전략위원회, 2012.

최경진/정준현/구태연/지성우/김도승/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
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2.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 Company, 2011.

Richard L. Villars/Carl W. Olofson/Matthew Eastwood, *Big Data: What
It Is and Why You Should Care*, IDC, 2011.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2012.

[Abstract]

Big Data Environment and Ways to Protect Personal Data

—A Critical Review of the Discourses to Revise the Law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Kil-Young Oh*

It was only a few years ago that we accepted the title, Digital Revolution. The internet access through personal computers and laptops, emails, and distribution of new contents such as digital images and MP3 sound sources brought about an enormous change in our lives. On the other hand, we are facing a new phase again. The earlier environment of digital revolution centering around devices and media gradually develops into a new form that works based on this network as the universal foundation.

Such an aspect reveals the start of a new ICT environment as well as new social issues. For example, the most recent example is the popularity of big data. It will be reasonable to state that the global internet industry concentrates on the new ICT environment where a large amount of data mass-produced from human digital activities are newly processed and commercialized. In line with the start of this big data environment, currently, there are large-scale discourses to revise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policies. This means that the necessity to revise the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as maintained and the proactive criticism of major principles of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hingyeong University

laws became available.

This paper started with a question as to the feasibility of these discussions. It is because there are perspectives other than incitement on new possibilities of the big data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attentively observe the international movement where negative impacts of the big data environment or enormous backlashes often referred to as ‘infringement on network privacy’ or ‘social hacking of personal data’ become subject to public opinions. This paper will provide a review of discourses pertaining to revision of the laws related to personal data protection from a critical perspective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the big data environment, sum up new legal issues arising from big data, and critically analyze new discourses trying to respond by overall revision of the laws related to personal data protection.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ata principals under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focus will be laid on the verification of specific feasibility in discussions pertaining to ‘re-organization of the concepts of personal data’ and ‘re-constitution of rights to consent’.

Key Words :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ights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big data, opt-in, opt-out